#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서삼석·문대림·임호선

이병진 • 박희승 • 복기왕

소병훈 · 김영진 · 정을호

이개호・윤준병・문금주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 이 생길 우려가 있음.

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을 두어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 등을 통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 면,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종자의 연구·육종·증식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하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, 수산종자산 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국립수산종자원) ① 수산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둔다.
  - ② 국립수산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
  - 2. 주요 수산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
  - 3.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
  - 4. 수산종자의 유통 관리
  - 5. 우량종자의 생산 · 판매 및 보급
  - 6.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
  - 7. 수산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
  - 8. 수산종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
  - 9. 국내 수산종자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
  - 10. 수산종자 관리체계 구축・운영
  - 11. 품종 관련 국제적인 동향 조사·분석 및 국제협력
  - ③ 국립수산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지13조의2(국립수산종자원) ① 수 산종자의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둔다. ② 국립수산종자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. 주요 수산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.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현 4. 수산종자의 사상・판매 및 보급 6. 수산종자의 생산・판매 및 보급 6.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 의 개발 7. 수산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8. 수산종자의 보전・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・산업화 지원 9. 국내 수산종자 개발업체에
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

- 10. 수산종자 관리체계 구축· 운영
- 11. 품종 관련 국제적인 동향 조사·분석 및 국제협력
- ③ 국립수산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